

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[별표 4] <개정 2020. 7. 8.>

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(제10조 관련)

1. 표시기준

가. 도안 모형



나. 표시도형의 문자 및 색상

표시도형에 있는 문자의 크기·종류·색상과 표시도형에 사용되는 바탕 색상은 용기·포장 등의 재질과 디자인에 맞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.

다. 삭제 <2020. 7. 8.>

2. 표시 방법

가. 도안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같은 배율로 조정이 가능하다.

나. 도안은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,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